

#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

## 심사보고서

2023. 9. 6.

행정재경위원회

의안 번호	209
----------	-----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. 8. 18. 복진경의원 대표발의(8명 발의)  
나. 상정의결  
- 제31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(2023. 9. 6.)  
“수정가결”

### 2. 제안설명 요지(대표발의자 : 복진경 의원)

- 가. 제안이유  
○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,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 확보 및 예산낭비 재발 방지에 이바지하고자 함
- 나. 주요내용  
○ 조례의 목적 (안 제1조)  
○ 공개대상·공개시기 및 방법 (안 제2조~안 제3조)  
○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운영 (안 제4조)  
○ 예산낭비 등 심사 (안 제5조)  
○ 성과금 등 지급 및 포상 (안 제6조)

#### 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「지방재정법」 제48조의2,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54조, 제54조의2
- 예산조치 : 논의 필요
- 입법예고 : 해당 없음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조성수)

- 본 조례안은 본 조례안의 실효성과 실행성을 제고시키는데 강남구 공무원은 물론 강남구민 등이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구정 참여형 조례안이라고 할 것임
  - 서울특별시와 17개 자치구는 이미 본 조례를 시행 중에 있으며, 인근 송파구와 서초구도 시행 중임.
- 안 제5조제2항은 강남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예산절감 사례 및 예산낭비 신고 등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성과금과 사례금 지급을 위한 심사를 이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임. 현재, 강남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자체 내부 훈령 규정에 따라 위원 구성을 외부 위촉위원과 내부 공무원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.
- 또한, 지방보조금에 국한하여서는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26조의2(신고포상금 지급 절차) 규정이 있어 향후, 이를 통합하거나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.
- 다만, 제6조제2항은 예산낭비신고 등을 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성격의 사례금을 지급하고 표창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만, 제5조와 연계하여 심사를 통해 지급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면, 다소 수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임.
  - 신고자가 악의나 오해로 신고하거나, 단순 민원 제기식 신고 등이 발생할 경우, 사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며, 조문대로 보면, 구청장 또는 누가 안 제6조제2항의 사항을 인정하는 것인지 다소 모호

함.

- 게다가 강남구민 이외의 사람이나 타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강남구 예산낭비사항 등을 신고할 경우, 포상금 성격의 사례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“주민” 보다는 (소극적이거나) “사람 등” 으로 설정하는 것이 상위법령과의 관계에서 볼 때도 타당할 것임.

- 본 조례안은 투명하고 깨끗한 선진적인 강남구 재정운용을 위해 필수적인 조례안이며, 지방재정에 구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스스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조례안이 될 것임.
- 다만, 안 제2조(공개대상)의 정보공개를 집행기관 해당부서에서 재량적으로 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, 시행 경과 보고, 예산낭비신고 등과 관련한 사례금 지급심사 등을 포함한 본 제도운영을 위한 별도의 “위원회” 를 둘 것인지 여부 및 수정검토 사항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토론과 논의가 필요할 것임.

**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생략”**

**5. 토론 요지 : “생략”**

**6. 심사결과 : “수정가결”**

**7. 소수의견의 요지 : “없음”**

**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**

- 붙임 1.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
2.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. 끝.

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 
조례안에 대한

**수 정 안**

관련의안번호

제209호

제안일자 : 2023.9.6.

제안자 : 행정재경위원장

**1. 수정이유**

-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신고 관련 성과금 지급 대상의 명확화를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, 보완하고자 함.

**2. 수정주요내용**

-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신고 관련 성과금 지급 기준 및 대상의 명확화(안 제6조제2항)

##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한 제안을 하거나, 효율적인 예산집행 또는 재발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” 을 “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제5조의 심사를 거쳐” 로, “주민” 을 “사람 등” 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한 제안을 한 사람
2. 효율적인 예산집행 또는 예산낭비 방지에 기여한 사람

##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,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 확보 및 예산낭비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공개대상)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예산절감 사례와 그 조치 결과
2.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 사례
3. 결산검사·행정사무감사 등에서 확인된 예산절감 사례 및 시정 조치된 예산 낭비 사례
4. 구 재정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
5.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의 공개대상 중에서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.

제3조(공개시기 및 방법) ① 구청장은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을 매년 세입·세출결산서 발간 전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공개 시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·주민등록번호·직

위 및 주소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.

제4조(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) ① 구청장은 「지방재정법」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·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,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(이하 “예산낭비신고 등”이라 한다)을 접수·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(이하 “신고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예산낭비신고 등의 신청, 접수 및 처리 절차는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54조의2 및 「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다.

③ 구청장은 신고센터의 설치 현황 및 예산낭비신고 등의 신청 방법 등을 구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.

제5조(예산절감 등의 심사) ① 구청장은 예산절감 사례 및 예산낭비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심사는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54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시행한다.

제6조(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) ① 구청장은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직접 기여한 부서 및 공무원 등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제5조의 심사를 거쳐 예산낭비신고 등을 한 사람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.

1.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한 제안을 한 사람
2. 효율적인 예산집행 또는 예산낭비 방지에 기여한 사람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표창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」,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한 규정」,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